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10. 2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10월 16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5년 10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15년 10월 27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류보현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에 따라 법령과 관련된 사항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 강화(안 제3조)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추가하여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 2)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강화(안 제3조의2 ~ 제3조의3)
 - 재심의 및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 명확화(안 제10조)

- 관리계획 구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하는 규정 신설

4)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안 제30조)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로 감액대상 변경

(전년도 대비 10%이상 초과상승분 => 5%이상 초과상승분)

5) 변상금 징수유예 규정 신설(안 제87조의2)

-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 변상금 징수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함

6) 기타 조례의 미비점 보완

- 조례 해석 및 적용 시 혼란 방지를 위해 법 제27조 개정사항 반영 (안 제2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15.7.1)으로 관련급여 중 대상자를 제1호 및 제4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선택 (안 제25조제3항, 제34조제1항3호)

- 지방재정법 제67조에 따라 경리관 => 재무관, 분임경리관=> 분임재무관으로 변경함(안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70조)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각각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내용 중 일부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로 감액률을 변경하였으며, 변상금 징수유예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재정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1.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 하는 등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강화

가) 심의회의 구성

- 1) 구성인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
- 2) 위원장 : 기획경제국장 => 부구청장
- 3) 위원자격 : 구청 과장중 구청장이 임명 => 마포구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민간위원
- 4) 민간위원 인원수 :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
- 5) 민간위원의 임기 : 2년, 한차례만 연임

나)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강화

-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수익계약에 따른 재산의 매각가격 심사결정」 조항을 개정조례안 제3조의2 제1항제3호로 변경하면서 빈번한 심의회 개최를 억제하기 위해 「영 시행령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익매각」 하는 경우로 변경
- 2)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와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는 재심의 하도록 개정조례 제3조의2 제1항제6호에 신설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 제3조의2 제2항제4호라목 신설
- 4) 심의회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이해 당사자인 경우나 위원 본인이 용역·자문·연구·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는

해당위원을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조례안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신설

2.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여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갈등해소

가) 자치단체와 구의회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계획 구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명확히 하는 규정을 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에 신설

3. 사용료 및 대부료, 변상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음.

가)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1)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에 의거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조례안 제30조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대상을 전년도 대비 10%이상 초과상승분에서 5%이상 초과상승분으로 조정함으로써 급격한 사용료 등의 상승률 완화

나) 변상금 징수유예 규정 신설

1)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41항에 의거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 변상금 징수유예기간을 법정 최장기간인 1년으로 정하는 조례 개정안 제87조의2 조항을 신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일부를 선택하여 개정

가) 개정조례안 제25조 3항 및 제34조 1항3호는 2015.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까지 급여 중 대상자를 제1호 및 제4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택

5. 기타 조례의 미비점 보완

가)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개정사항을 반영=> 안 제20조1항, 4항, 5항

나) 「지방재정법」 제67조에 의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변경=> 안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70조

○ 동(同) 조례안은 2015.8.27.~9.16.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은 없으며,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 1)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을 기획경제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하였으며,
- 2)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명확하게 하였고,
- 3)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이상 초과상승분에서 5% 이상 초과상승분으로 조정하였으며,
- 4)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징수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였고,
- 5)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는 등 조례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타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새로 개정된 상위법에 적합하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